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남근의원 · 신장식의원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9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4
IV . 검토의견	10
1.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필요성	10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15
3. 정의	18
4. 주식 및 사채	20
5. 상장회사의 기관	26
6. 주주의 권리 행사	44
7. 인수·합병 등	49
8. 보칙	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신장식의원·한창민의원 등 34인
2. 제 안 일 : 2024. 8. 20.
3. 회 부 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재벌 기업집단이나 기업집단의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2-2024년 사이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value up”을 국정 목표로 제기하고 있음. 일본의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은 이사회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부는 금융감독원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외에 별다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대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자본시장 value up” 정책도 상속세 감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초

점을 두고 있으나 그러한 감세 정책이 실제로 자본시장 value up에 기여할지는 회의적임.

특히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이 기업집단이나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고 그 목적, 방식, 비율 등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업집단이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태양을 보이고 있음. 투자자들이 미래 신기술,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물적분할로 이러한 핵심 미래 사업을 분리하면 기존 회사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돼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한 후 해당 사업을 물적분할로 자회사로 분할한 후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2021년 9월 물적분할을 통해 배터리 부문을 에스케이온으로 분사하면서 30만 대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10만원 대까지 하락한 사례나, 최근 두산그룹의 캐쉬카우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을 떼어내어 적자기업인 두산로봇티스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던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삼성그룹 내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강행하는데도 삼성물산 이사들

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고 삼성 기업집단 내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강행하여 주주들에 피해를 입힌 사례 등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이어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다는 기업집단 내지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하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ing)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독립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3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참여와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적절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이를 소각하도록 하는 등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함.

다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시급하게 수시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비상장회사나 중소기업 등 폐쇄적 구조의 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법과 구분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배구조 개선을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ESG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해지는 주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아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외이사” 용어를 본법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제7호).

나.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주명부 확보의 편

의를 위해 주주가 회사뿐 아니라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입되는 정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
6조 및 제40조).

다. 자기주식이 지배권 승계, 지배력 확보 등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주식의 취득은 소각과 주식보상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에는 차기 총회에서 소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한하여 발행을 허용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과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종류주식의 발행은 허용하지 않음으
로써 종류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 나
가 소집공고에 포함되는 임원 선임, 임원 보수 등 주요 안건에 대
한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도모함(안 제14조, 제
15조 및 제18조).

바. 현장주주총회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주요 상장회사(대형상장회사 및 이중상장회사 등)는 정관으로 집
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주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
함(안 제19조).

아. 임원 선임과 해임 및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의안을 분리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안건별로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보수정책 및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함(안 제21조).

차.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배출량, 장기·중기·단기의 감축 목표 및 감축 전략 등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

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임원 및 독립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임원 및 독립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파.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이사의 수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또한, 주요상장회사에 강화된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함(안 제26조 등).

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함. 나아가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안건의 총회 결의 시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함(안 제28조 및 제30조).

거. 주요상장회사에 이사회내 위원회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성과평가, 보수 규정의 심의·의결, 보수의 결정, 환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너. 상장회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책임감면에 관한 「상법」 제400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3조).

더.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주주제안이 제기된 경우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해 관여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6조).

러. ESG 이슈에 관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함(안 제42조제2항).

머. 「상법」상의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권을 강화함(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버.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보열람 및 등사권”으로 확대함(안 제44조).

서. 상장회사가 30% 초과 보유 중인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이 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소 제기 요건을 대표소송 수준으로 완화함(안 제46조).

어. 주주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함(안 제48조).

저. 계열사 간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분할합병, 분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회 결의 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3% 이내로 제한함. 또한 해당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안 제49조부터 제51조).

처.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의 의결권 부활을 막기 위해,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로의 자기주식 승계를 금지하고,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의 신주발행을 금지함(안 제52조).

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등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총회 결의 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3%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이 제

공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

터. 주주들에게 회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주주총회 2주 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에게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주총회의 결과 및 대표소송의 제기사실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필요성

- “상장회사”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말 기준 2,670개의 상장기업이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2,561.8조원에 달하고 있음.

[표1] 상장회사 현황

(단위: 조원)

시장	상장 기업수	시가 총액	매출액	당기 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
코스피	839	2,126.3	1457.1	75.0	2,262.2	981.5	1,280.6
코스닥	1,702	431.7	178.8	3.2	283.4	102.9	180.5
코넥스	129	3.8	2.3	△0.2	3.5	2.0	1.4
합 계	2,670	2,561.8	1,638.2	78.4	2,549.1	1,086.4	1,462.5

주1: 상장기업수 및 시가총액: '23년 말 기준

주2: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23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업(영업이익 기재) 및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분석이 곤란한 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709사, 코스닥 1,452사, 코넥스 114사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상장회사 관련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인 「상법」, 재무활동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상장회사(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특례”로서 각각 나누어 규정되어 있음.

[표 2]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

법	구분	조문	조 제목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장의2 주권상장 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상장회사 관련 법률 체계의 연혁을 살펴보면, ① 舊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최초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었고, ②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1997년에 舊 「증권거래법」으로 이관되었으며, ③ 2009년 舊 「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편입되었음.¹⁾

1) 상장회사 관련 규제체계 연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 2009년 舊「증권거래법」 폐지 시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에 대한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부처 간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舊「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는 상법에서,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는 자본시장법에서 각각 규율하게 되었음.

□ 이처럼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률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²⁾, 주무부처 역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 상장회사에 관한 정책이 통일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제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인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 적용대상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아울러, 과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배구조 개선, 대주주 견제 및 소수주주권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정안에 포함시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편, 해외 주요국의 “상장회사”와 관련한 규율 사례를 살펴보면³⁾,

○ 미국은 독립된 상장회사법제를 두고 있지 않고, 증권의 발행과 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상장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이라 할 수 있음.

3) 권재열,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2019. 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래 등에 관하여 연방법 차원에서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두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사항은 전국규모의 거래소가 마련한 「상장회사규정」(Listed Company Manual)에 따르고 있음.

○ 독일은 1937년부터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정을 상법전에서 분리하여 단일법인 「주식법」(Aktiengesetz)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법은 상장회사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특칙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2005년부터 상법전에서 회사편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공포한 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후,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개념에 해당하는 「공개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공개회사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음.

□ 제정안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율하는 입법⁴⁾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⁵⁾이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4) 해외에서도 독립된 상장회사법제를 갖춘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5) 예를 들면, 상장(유지) 부담의 증가로 인한 상장의 기피 또는 자진 상장폐지 확대

- 또한, 제정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 논의와 겹치며, 2008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를 상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⁶⁾
- 이사의 충실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경영자율성(경영판단원칙, 경영권 방어장치 등)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상법」 규제의 틀 안에서 규율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6) 2008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사법제의 이원화 현상을 막기 위해 「상법」 체계에 들어와야 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상법」 체계로 편입되었음.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칙, 주식 및 사채, 상장회사의 기관, 상장회사 회계, 주주의 권리 행사, 인수·합병,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보칙, 벌칙 등 총 9개의 장, 6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제정안의 구성

장	절	조문	조 제목
총칙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식 및 사채		§5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
		§6	주주명부 및 전자주주명부
		§7	액면미달발행
		§8	주식매수선택권
		§9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10	의결권 배제·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1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
		§12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
상장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13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1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15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주요 내용
		§16	전자주주총회
		§17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18	전자투표 등
		§19	집중투표
		§20	의안의 분리상정
		§21	이사의 보수
		§22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임원 및 이사회	§23	이사의 충실의무
		§24	임원의 결격사유
		§25	독립이사 등의 결격사유
		§26	이사회 구성
		§27	독립이사에 관한 중소기업 특례
		§28	상근감사
		§29	감사위원회
		§30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등
		§31	보수위원회
		§32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33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의 제한

장	절	조문	조 제목
상장회사의 회계		§34	이익배당
		§35	주식배당
		§36	재무제표 등의 승인과 이익배당
		§37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
		§38	상장회사 재무관리기준
주주의 권리 행사		§39	주식을 보유한 자의 정의
		§40	실질주주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
		§41	총회 소집청구권 등
		§42	주주제안권
		§43	이사 등 해임청구권
		§44	주주의 경영정보열람 및 등사권
		§45	유지청구권
		§46	주주의 대표소송
인수·합병 등		§47	주식보유 기준의 완화
		§48	의무공개매수
		§49	합병 등
		§50	합병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5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52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5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칙		§54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5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56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57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58	공시
벌칙		§59	상장회사에 대한 조치
		§60	벌칙
		§61	벌칙
		§62	양벌규정
		§63	과태료

□ 제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배주주 개선 및 소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 특히, 주로 「상법」상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 중 일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는 「상법」 개정안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해당 개정안 심사경과와 연계하여 이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이하에서는 ① 총칙 중 정의, ② 주식 및 사채, ③ 주주총회 및 임원·이사회 등 상장회사의 기관, ④ 주주의 권리 행사, ⑤ 인수·합병 등, ⑥ 보칙 등에 대하여 주요 조문별 세부내용을 검토함.

3. 정의

- 제정안은 총칙에서 상장회사와 관련된 10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회사 2.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3. “외국법인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최대주주”란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을 말한다. 5.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공적 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임원”이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이사(동조 제3항의 사외이사는 본 법에서 “독립이사”라 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상법」 제409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말한다. 8.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

제 정 안

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10. “주요상장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

나. 해당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최대주주가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회사인 경우 해당 상장회사

□ 제정안 제2조제7호에서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⁷⁾의 명칭을 이 법에서는 독립이사로 하려는 것임.

○ 이는 회사의 외부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를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변경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을 갖는 동시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7)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상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에서만 ‘독립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주식 및 사채

- 제정안은 주주명부 및 전자명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의결권 배제·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 정 안
제6조(주주명부 및 전자주주명부) ① 상장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4.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③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

제 정 안

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한 경우. 다만, 자기주식의 소각 결정이 자기주식 취득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 주식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상장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상장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권 배제·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상장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상장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

제 정 안
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상장회사가 「상법」 제346조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정안 제6조는 상장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상법」 제352조⁸⁾에서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⁹⁾에서는 회사가

8)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¹⁰⁾

□ 다음으로, 제정안 제9조는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과 주식보상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소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것을 의미함.

○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41조¹¹⁾)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등
특정목적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제341조의 2¹²⁾)할 수 있도록

10) 주요국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등 제도비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2】 참조

1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
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상법」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회사의 자금이 투입된 자기주식이 우호지분 확보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지배권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³⁾
- 금융위원회도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이른바 ‘자사주 마법’)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¹⁴⁾
- 이에 제정안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소각과 주식보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권의 강화를 방지하여 소유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① 해외 주요국의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자기주식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② 자기주식이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13) 경제개혁연대,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한 제22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2024. 5.
- 14)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 6. 4.

기업 경영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③ 자기주식 매입은 소각하지 않더라도 유통 주식 수 감소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제정안 제10조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이익 또는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과 회사가 전환권 행사가능한 전환종류주식의 발행은 금지하려는 것임.

○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조건 등을 정하도록 규정¹⁵⁾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종류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 다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정안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서 종류주식을 임의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를 이미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남용 가능성만을 고려한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15)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상장회사의 기관

가. 주주총회

- 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집중투표, 의안 분리상정, 이사의 보수,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 정 안

제14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그러한 방식으로 개최되는 총회를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36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제1항의 방식으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1항의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

제 정 안

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의 상장회사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16조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 의사 진행 등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이를 이유로 「상법」 제376조에 정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상장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제 정 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자투표 등) 상장회사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집중투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한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상장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제20조(의안의 분리상정) ①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임원마다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관련 조문마다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집중투표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의 보수) ① 상장회사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보수 원칙과 목표, 보수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후 3년 이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정책 중 보수지급계획을 제외한 사항들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가장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는 무효이다.

④ 제2항을 위배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결의는 회사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제 정 안

보수보고서가 부결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보수정책 전부를 포함하여 결의해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상장회사는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배출량, 장기·중기·단기의 감축 목표 및 감축 전략(이하 “기후전략”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기후전략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상법」 제368조제1항의 방식으로 결의하되, 표결 결과는 회사 또는 이사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1. 기후전략은 3년마다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다만, 기후전략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기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이행은 매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안건이 부결된 경우 이사회는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4조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상법」 16)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로

16)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4주(임시 주주총회의 경우 8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주총회가 3월 중하순에 집중되어 주주총회가 여러 상장회사 간 중복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 소집통지기간이 2주에 불과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주주 의결권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두 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여 주주의 충분한 안전검토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긴박한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8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사실을 통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제정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의미함.

- 현행 「상법」 제364조¹⁷⁾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 총회를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

음할 수 있다.

17)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실재하는 장소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상법」 제368조의4¹⁸⁾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주주총회에 불참 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주주 의결권 행사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현장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8개 경제단체¹⁹⁾는 주주들의 전자적 출석이 가능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행되어야 하며,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주주들의 선택 및 기업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18)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협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이하 같음.

□ 한편, 제정안 제18조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임.

○ 현행 「상법」 제368조의4²⁰⁾에서는 회사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취지임.

○ 전자투표 의무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다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인주주의 주식 보유는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고, 현재에도 전자투표를 활용한 의결권의 행사 비율이

20)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조하므로, 전자투표제는 기업의 재량에 의하되 전자투표 실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제정안 제19조는 주요상장회사²¹⁾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집중투표제”란 지배주주가 회사의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하나의 결의로 하는 방법을 의미함.²²⁾

○ 현행 「상법」 제382조의2²³⁾에서는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하여금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

2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주요상장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

나. 해당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최대주주가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회사인 경우 해당 상장회사

22) 송옥렬, 「상법강의」, 2022.

23)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336개의 상장회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상장회사 비율은 3.5%(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9%)²⁴⁾에 불과하여 집중투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주요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의 정관 배제 규정 삭제를 통하여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다만, 8개 경제단체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한 것은 주주 다수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기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2~3대 주주가 이사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어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인 자본다수결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 제20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해임할 때에는 임원마다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집중투표제 제외)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조문마다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임·해임 대상

24) 한국거래소. 「‘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3. 12.

임원별, 정관의 조문별로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은 주주총회 안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 제21조는 이사의 보수 결정 시 회사의 보수 원칙과 목표, 보수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이하 “보수정책”)을 주주총회에서 결의(구속력 있는 결의)하도록 하고, 보수정책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각 이사에지급한 보수 내역을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권고적 결의)하도록 하는 “Say on Pay”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상법」 제388조²⁵⁾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주주총회 이사보수 결의는 이사보수 총액 한도만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의 보수를 주주들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법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²⁶⁾

○ 이에 제정안은 Say on Pa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수정책과 보수산정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25)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이를 정한다.

26) 경제개혁연대,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한 제22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2024. 5.

- 한편, 「상법」 제361조²⁷⁾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42조에서는 이러한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8개 경제단체는 권고적 주주제안제도의 도입 시 현행 「상법」과 제정안이 다루는 주주제안 안건의 범위가 달라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 실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가 본질을 벗어나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22조는 기후전략의 수립·이행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권고적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안건 부결 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Say on Climate”(이하 “세이온클라이밋”)은 기후전략의 수립·이행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함.²⁸⁾

27)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28) 노종화·이승희, “Say on Climate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대, 2023. 9.

- 제정안은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한 주주관여(engagement)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Say on Pay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21조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므로, 제정안 제41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²⁹⁾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향후 동 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임원 및 이사회

- 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임원의 결격사유, 독립이사 등의 결격사유, 이사회의 구성,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선임, 보수위원회,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3조·제26조·제28조·제30조).

제 정 안
제23조(이사의 충실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

29) 의안번호 2203715, 김남근의원 대표발의(2024.9.5.)

제 정 안

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사의 수로서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못한다.

②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주요상장회사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주요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41조·제42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⑥ 주요상장회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8조(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

제 정 안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총회 결의를 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제42조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안전에 관한 총회 결의를 할 때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주식비율 보다 낮은 주식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의 주식보유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없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등) ① 주요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주요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제28조제2항·제3항의 방식을 따른다.

④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정안 제23조는 직무 수행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상법」 30)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 보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취지인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 참고로,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³¹⁾
- 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추가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지배구조의

30)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1)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① 회사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신속한 투자 결정을 저해할 우려³²⁾가 있고, ② 이사는 회사에 대한 수임임으로서 선관의무를 지고 있는 현행 「상법」³³⁾ 및 「민법」³⁴⁾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고 소송 남발을 유발할 수 있어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제정안 제26조는 정관으로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총원의 상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법」 제542조의8³⁵⁾에서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

32) 최근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은 주로 재무적 투자자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한 관심이 적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적 투자,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고용창출 등에 대한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정우용,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 (I)」, 입법조사처, 2024. 11.)

33)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5)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사 총수 제한을 금지하고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이사의 수를 확보하여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독립이사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8개 경제단체에서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방식은 기업 자율 재량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현행 「상법」상 이사회 구성방식이나 지배구조 규제수준이 이미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구성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 제28조 및 제30조는 주요상장회사에게 감사위원이 될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이하 “분리선출”)하고,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특수관계인과 합산)로 제한하려는 것임.

- 현행 「상법」 제542조의12³⁶⁾에서는 감사위원 중 1명에 대해 분리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6)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

선출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의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개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음.

- 제정안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3%로 제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회계 및 업무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은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외부 투기자본의 영향력 강화³⁷⁾에 따른 기업의 장기 성장 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³⁸⁾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7) 대주주 개개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투기세력 등은 자유롭게 다른 주주와 연합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

38)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 주주의 권리 행사

- 제정안은 주주제안권, 주주의 경영정보열람 및 등사권, 주주의 대표소송 등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42조·제44조·제46조).

제 정 안
제42조(주주제안권) ①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제44조(주주의 경영정보열람 및 등사권) ①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5 이상(주요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 대통령령으

제 정 안

로 정하는 경영정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 채권자 및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6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이하 “지배출자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이하 “피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출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가 제기된 경우 지배출자회사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의 제기에 관해서는 「상법」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를 준용한다.

□ 제정안 제42조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도록 하되, 회사는 해당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제도(Advisory Shareholder Proposal)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현행 「상법」 제361조³⁹⁾에서는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법」 제361조⁴⁰⁾에서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환경이나 사회 등의 문제에 관한 주주제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권고적 주주제안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의 보장 및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특히, 이 제정안에서는 Say on Pay 제도와 Say on Climate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들 제도를 통하여 주주관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경영 일선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경제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39)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0)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 제44조는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6개월간 계속하여 10만분의 5(주요상장회사는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계장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 경영정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상법」 제466조⁴¹⁾ 및 제542조의6⁴²⁾에서는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제표만으로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한편, 제정안은 회계장부뿐 아니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 경영정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경영정보까지 확대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경영정보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회사 경쟁력 악화,

41)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42)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의 남소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⁴³⁾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46조는 다른 회사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로서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은 피출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법」 제406조의2⁴⁴⁾ 및 제542조의6⁴⁵⁾에서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은 자회사(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 보유)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자회사의 지분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소 제기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소요건의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4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4)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45)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익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인수·합병 등

□ 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분할 및 분할합병 등 M&A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48조부터 제51조).

제 정 안
제48조(의무공개매수) ①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매수, 신주인수권의 행사, 교환, 입찰, 그 밖의 취득 등(이하 “매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매수 이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된 상장회사의 주식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추심,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2.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매수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 정 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가액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 주식의 최고가액 이상으로 하며, 공개매수에 청약한 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 기간, 매수 방법, 가격 등 제1항의 공개매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합병 등)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4.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5. 분할합병
6. 분할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로 인한 회사 설립

②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의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합병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장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제 정 안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를 할 때에는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1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49조제1항의 결의에 반대하는 상장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상법」 제360조의9·제527조의2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상장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상장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회사나 매

제 정 안
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48조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하도록 하고, 공개매수 후 지분이 50%를 미달하는 경우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의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회사의 소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보호장치 미비로 일반주주의 자금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⁴⁶⁾이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⁴⁷⁾

○ 이에 제정안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일반주주가 M&A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매각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46)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쌓아온 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한 할증액으로,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출처: 박진,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47) 홍지연, “국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및 글로벌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2-25호, 2022.12.19.

만 귀속되어왔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⁸⁾

○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은 주식등의 추가 매수, 일반주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등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부담을 가중 시킴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주주의 권익과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적정한 의무공개매수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 M&A 시장 위축 가능성, 해외 입법례⁴⁹⁾,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⁵⁰⁾이 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제정안은 해당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는 분할·합병 이외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 총회 의결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48) 그 밖에도, 일반주주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치감소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49)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제도비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3】 참조

50) 강훈식의원 대표발의(2024.6.20., 의안번호 2200692), 강명구의원 대표발의(2024.10.24., 의안번호 2204873)

- 현행 「상법」 제530조의3⁵¹⁾에서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인수·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제정안은 주주총회 승인대상이 되는 M&A의 범위 확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지배주주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상법」 제369조제1항⁵²⁾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보칙

- 제정안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56·제57조).

51)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정 안

제5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① 상장회사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속가능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기준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는 지속가능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지속가능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는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먼저, 제정안 제56조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주주총회 2주일 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상법 시행령」 제31조의제4항제4호⁵³⁾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데, 제정안은 그 기한을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⁵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⁵⁵⁾에서는 감사인의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합성에 부

53) 「상법」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 공고)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사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5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만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병행하여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당길 경우 외부감사의 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 제57조는 상장회사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현재 거래소 규정⁵⁶⁾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으나, 일부 대규모 기업만 이를 공시하고 있음.⁵⁷⁾
- 제정안은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 공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안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의무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대상기업 범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⁵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제정안은 해당 개정안의 심사경

5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호 및 시행세칙 제8조제7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13조제18호

57)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기업은 211개에 불과한데, 이 중 대부분이 코스피 기업(197개)이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 절반 이상인 151개에 이르고 있음.

58) 김남근의원 대표발의(2004.9.5., 의안번호 제2203715호)

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1

【참고자료 1】 상장회사 관련 규제체계 연혁

구 분	시기	내 용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육법’)	1968년 제정 - 1997년 폐지	최초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舊증권거래법	1962년 제정 - 2009년 폐지	‘자육법’ 폐지로 상장회사 특례규정 舊증권거래법으로 이관(1997년) - 상장회사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2000년, 2001년 개정)

舊증권거래법 폐지(2009년)

: 舊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편입

구 분	시기	내 용	이원화 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2007년 제정 ¹⁾	상장회사 재무관련 사항 (舊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中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	부처간 조정을 거쳐 ‘자본시장법’과 ‘상법’ 제·개정과정에서 증권거래법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는 상법에서 규정,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
상법	2009년 개정 ²⁾	상장회사 지배구조관련 사항 (舊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中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제정, 2009. 2. 4. 시행)

주2) 상법(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참고자료 2】 주요국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기한 등 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주총 개최 시기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 (§354)	- 정관이 정하는 기간 내 (§7.01) -단, 결산일 후 6월 또는 직전 정기총회 후 15개월 이내에 미개최시 주주가 법원에 신청 可 (§7.03)	- 결산기 종료후 6개월 이내 (§336) * 폐쇄회사는 정기주총 미개최가 원칙, 회사선택에 따라 개최	영업년도 개시 후 8월 이내 (§175①)	- 결산기 종료후 일정기간(3월) 이내 (§296) - 기준일 유효기간의 해석(3월)(§124②))
소집 통지 기한	총회일 2주전 (§363)	- 공개회사는 총회일 40일 前 인터넷 통지 要 (SEC Rule 14a-16) - 총회일 前 10~60일 (§7.05)	- 공개회사 (§307(2)) - 정기주총 : 21일전 - 임시주총 : 14일전	- 총회일 30일전 (§123) - 다만, 기명식주식은 총회 21일 전 (§125)	- 공개회사 : 2주전 -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2주전 통지 (§299)
첨부 서류	- 소집통지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서면투표용지, 위임장 및 참고서류 등 (투표제도별) - 인터넷 통지 可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363)	- 소집통지서, 위임장, 연차보고서 (SEC Rule 14a-3) - 인터넷 통지 可	- 소집통지서 - 웹사이트 공지 可	- 소집통지서 - 사업보고서 (선택) - 홈페이지에 소집정보 공고의무(124a조)	- 주주총회 참고서류, 의결권행사서면 (§301) - 인터넷 통지 可
채무 제표 승인 기관	- 주주총회(원칙) - 이사회(정관 및 감사요건충족시) (§449, §449조의 2, §462)	이사회 (§16.20)	이사회 (§414(1))	이사회 및 감사회 (§172, 173)	- 이사회 (§439) - 회계감사인설치회사
배당 결정 기관		이사회 (§6.40)	이사회 (§830)	주주총회 (§174)	주주총회 (§454)
참고 법규	상법	RMBCA	Company Act 2006	Aktiengesetz	會社法

【참고자료 3】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요국 입법례

지 역	국 가	주요 내용
아시아	싱가포르	①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② 30%~50% 보유 주주가 6개월 이내에 1%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일본	① 지분 취득으로 1/3 초과되는 경우 → 공개매수 ② 2/3 이상 되는 경우 → 전부 공개매수청약
	홍콩	①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②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2%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EU	공통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구체적 기준은 각국에 위임)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네덜란드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독일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영국	①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② 30%~50% 보유 주주가 1주라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모두에게 매수청약하여 50%+1주 보유시까지 공개매수 의무
	이탈리아	① 이사회 선·해임권을 갖는 지분 또는 의결권을 25% 이상 취득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30%) 또는 ② 25%~50% 보유주주가 12개월 이내에 5%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프랑스	①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② 30%~50% 보유 주주가 12개월 이내에 1% 이상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기타	캐나다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호주	이른바 20% rule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20% 이상 보유 금지. 단 takeover bid(공개매수)나 법원이 승인하는 scheme of arrangement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